『한국민족문화』 44, 2012. 8, 179~210쪽

여말선초 상·제례 변동과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이 상 균*

1. 머리말
2. 사례를 통한 사회적 맥락 분석
 1) 불교의례
 2) 유교의례
3. 상·제례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1) 의례 대상과 수행주체 변화
 2) 의례 공간 설립과 제도화
 3) 의례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 필자는 여말선초 상·제례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려시대 불교의례를 매개로 조성된 사회적 관계가 여말선초 유교의례가 정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방식을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의례 대상과 수행주체의 변화, 의례 공간 설립과 제도화를 살펴보았다. 그러한 의례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의 변화는 점차 의례에 참여하는 사회 주체들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고려 말 불교 상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고려 귀족 가문과 사찰 및 승려와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의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관계를 넘어서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귀족 가문과 승려는 친족관계

* (사)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cyrexe@hanmail.net)

로 이어져 있어서 가문의 정치 경제적 교환이 승려와 사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기 유교의례 정착 이후 승려를 통해 사찰을 중심으로 수행된 의례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이는 가문과 불교세력간의 사회적 관계가 약화됨을 의미하였다. 대신 유교의례의 정착은 새로운 의례 공간인 가내 사당을 창출하였고, 의례 수행 주체를 친족 구성원으로 한정하면서 친족집단의 사회조직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다.

*주요어: 여말선초, 의례변동, 사회적 관계, 불교의례, 유교의례

1. 머리말

여말선초 시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抑佛崇儒'라는 용어는 이 시대 사상적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 용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말선초의 전환기를 불교사회에서 유교사회로의 전환으로 큰 시대적 조류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층위에서 세부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검토해 보았을 때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속도 및 양상은 달랐다. 예를 들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의 변화와 함께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구시대 권력 지형을 다른 영역보다 빠르게 개혁해 나갔다. 하지만 일상의 사회 관습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제례와 같은 의례 영역의 변화는 그 시대의 立法 및 敎化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해갔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불교와 유교의 위상은 왕실을 비롯하여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기 전통 사회구조와 밀착되어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말선초 상·제례 변화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 종교 중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의례를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즉, 그 당시 의례 변화는 전통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와 맺고 있는 포괄적인

(inclusive) 관계의 변화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유교의례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현상으로 의례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주자가례의 수용 및 정착과 관련된 연구,[1] 유교의례 수용에 따른 禮學과 관련된 연구,[2] 조상제사 관념 변화를 다룬 연구[3] 등을 들 수 있다. 마르티나 도이힐러는 조선 초기 유교 이념의 실천과 사회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4] 새로운 의례 형식의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 사회 재편성이라는 측면은 크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의례변화는 개별 의례의 변화 위상에서 벗어나 전체 사회구조와 연동된 변화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의례를 매개로 결합된 사회적 관계[5]의 차원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 의례 변화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기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여말선초 전환기 상·제례 변화가 의례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재편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의례변화를 통해 약화되거나 혹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말선초 상·제례 의례변동은 불교 및 구세력이 결합된 사회적 맥락을 해체시키고, 유교의례를 통해서 새로운 세력에게 적합한 사회를 재편성하기 위한 시도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불교의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던 사회적 결합이 유교의례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으로 이

1) 고영진, 「15·16세기 주자가례의 시행과 그 의의」, 『한국사론』 21, 한국사학회, 1989; 정긍식, 「조선전기 朱子家禮의 수용과 祭祀承繼 관념」, 『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177~198쪽 등

2) 황원구, 「이조 예학의 형성과정」, 『동방학지』 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3; 고영진, 『朝鮮 中期 禮說과 禮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등

3) 권기석, 「조선전기 유교적 조상제사 관념과 친족관계의 전개」, 『애산학보』 29, 애산학회, 2003, 69~141쪽.

4)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환』, 서울: 아카넷, 2003.

5) 본 논문에서 '사회적 관계'라는 용어는 한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주체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그러한 사회적 주체들은 왕실, 귀족집단, 승려집단, 신진사대부 집단, 친족집단 등을 의미한다. 이들 사회적 주체는 확정된 단일한 목적성을 가진 주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시대 이들 주체들 간의 관계라는 측면을 서술하는데 그러한 설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의례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상·제례 의례를 사료에서 추출하여 구체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 지배 계층 상·장례의 구체적 실천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 의례변동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의례 대상과 수행주체, 의례 공간 및 제도화 방식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례를 통한 사회적 맥락 분석

먼저, 고려시대 불교의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와 여말선초 전환기 유교의례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6)]

불교와 관련된 상·제례의 구체적인 사례는 제한적이다. 그나마 상례 사례의 경우 남아있는 墓誌銘을 통해서 당시 상례의 단편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대상으로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중반에 사망한 인물의 상례 사례를 추출하였다. 사망한 조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불교 제례 의식으로 盂蘭盆齋 등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고, 상례 사례를 통해서 불교의례가 포괄하는 사회적 맥락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교 제례와 관련된 사례는 생략하고자 한다.

유교 상·제례와 관련해서는 가례에 대한 조정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교의례 사례보다 늦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초창기『朱子家禮』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던 14세기~15세기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6) 특히,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가문 내부의 의례 행위의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1) 불교의례

고려시대 국가가 주도한 불교의례는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강조한 燃燈會와 八關會가 중요한 의례 행사가 되고 있었다.[7]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연등회는 고려 말까지 총 115회 개최가 되었고, 팔관회는 157회 개최가 되었다.[8] 그 만큼 순환적인 연례행사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연등회, 팔관회와 같은 공식적인 불교의례와는 달리 불교식 상·제례는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의례 성격을 띠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불교식 상례를 중심으로 비교적 상례 과정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고려시대 묘지명을 선정해서 살펴보기로 한다.[9]

〈사례 1. 李頲 墓誌銘〉[10]

李頲의 아버지는 당대 정사를 담당하는 최고 관청 중서문하성 수장에 해당하는 종1품 中書令직을 지낸 李子淵이다. 이정은 최고의 문관집안인 만큼 門蔭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그는 20살 때부터 관직에 진출하여 51세까지 관직 생활을 하였다. 다른 형제 4명 모두 관직생활을 하였고, 누이는 문종의 왕비가 되었다. 이정의 자식은 6남 4녀로 아들은 대부분 출사하였고, 다섯째 아들은 승려로 활동하였다. 그는 불혹 나이 때부터 근무시간 외에 불경을 늘 가까이 하였고, 5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 1077년 5월 13일 죽기 전 개경 佛恩寺에서 머묾. 아미타불의 이름을

7) 고려태조는 훈요10조를 통해서 첫째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섯째 항에서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하여 불교와 왕실의 관계, 그리고 의례를 강조하였다. 『고려사』 권2, 「世家」 2, 태조 26년.

8) 서윤길, 「불교사상이 고려의 국난타개에 미친 영향; 고려의 호국법회와 도량」, 『불교학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7, 14쪽.

9) 국립문화재 연구소 금석문 DB인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고려시대 불교 장례를 비교적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4개 사례를 선택하였다. 각 사례별 인물과 관련된 정보는 묘지명의 내용을 기초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상례 내용은 간략하게 추려서 언급하였다.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검색일: 2012.5.1.)

10) 원문 『高麗墓誌銘集成(第三版)』,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참고할 것.

읊고, 보살 8계를 받고 끝나자 사망.
- 1077년 5월 23일 불교법에 따라 서기산 기슭에서 화장. 유해는 사찰에 임시로 안치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모심.
- 1077년 10월 20일 점괘를 보아 임진현 백악 선영 근처에 장례를 지냄.

〈사례 2. 金永夫 墓誌銘〉[11]

金永夫는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집안 출신으로 정2품 尙書左僕射를 지낸 金克儉의 아들이다. 30세 진사과 합격 이후 30여 가지 관직을 두루 거친 후 정2품까지 올랐다. 자녀는 2남 3녀를 두었는데, 두 아들 모두 출사하였다. 7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 1172년 2월 8일 사망.
- 1172년 2월 21일 海安寺 북쪽 기슭에서 화장. 유해를 거두어 서쪽 등성이에 있는 淨土寺에 모셔둠.
- 1172년 5월 16일 臨津縣 북쪽의 승지동에 장례를 지냄.

〈사례 3. 王瑛女 王氏 墓誌銘〉[12]

王氏는 공주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불교를 신봉하여 불경 독서를 일과로 삼을 정도였다. 36세에 병이 든 후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 1185년 1월 13일 개경 남쪽 彰信寺에서 사망.
- 1185년 1월 30일 聖住寺 동쪽 기슭에서 화장.
- 1185년 2월 8일 유골을 거두어 개성부 경내 雲開寺에 임시로 모셔둠.
- 1186년 2월 25일 운개사 동북쪽 탁 트인 밝은 자리를 골라 장례.

11) 원문『韓國金石全文中世下篇』, 亞細亞文化社, 1984 참고할 것.
12) 위의 책 참고할 것.

〈사례 4. 梁宅椿墓誌銘〉[13]

梁宅椿은 윗대 선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이 60세가 되어서 지방관의 한 직책인 6품으로 추정되는 監務로 처음 벼슬에 나가서 종3품 禮賓卿에 이르렀다. 양택춘은 첫째 부인 사이에 2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 부인과 사별 후 다시 재혼하여 3명의 아들을 두었다. 아들 중 3명이 승려가 되었다. 장남인 승려 安其는 유명한 승려가 되었고 그 蔭德으로 둘째 부인 아들이 출사하였다. 83세에 별세하였다.

- 1254년 4월 7일 병이 심해져 승려를 불러 염불케 함.
- 임종시 불경을 외고 보살의 이름을 부르다가 사망.
- 승려가 된 큰 아들이 사자를 목욕재계 후 화장하여 유골 수습.
- 1254년 6월 14일 水陽山 기슭에 장례.

먼저, 위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11세기부터 13세기 불교식 상례는 사망한 계층인 관료 계층에게 상당히 보편적인 의례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들 계층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경을 읽고, 집안 자제를 출가시키기도 하였다. 〈사례 1〉 이정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불경을 늘 가까이 하였고 그 아들은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임종 전 죽음을 절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부처에게 귀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례 3〉 왕씨의 경우도 요절하였지만, 젊었을 때부터 불교경전을 늘 가까이 하였고, 임종을 사찰에서 맞이하였다. 〈사례 4〉 양택춘은 아들 3명이 불가에 귀의할 만큼 가풍에 불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불교 승려 직책은 한 가문의 관직 출사와 마찬가지로 출세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존재하였다. 즉, 가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집안에서 출가한 승려는 그 집안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며 불가에서의 출세는 그 집안의 품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례 4〉에서 볼 수 있듯이 음덕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아 門蔭과 유사하게 집안 형제가 출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13) 원문『高麗墓誌銘集成第三版』,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참고할 것.

이정이나 양택춘과 같이 자식을 승려로 둔 경우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불교 상례는 그들 아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고려시대 승려는 한 집안 출신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문 사람들이 임종했을 때 상례를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불교 상례 절차라는 측면에서 위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한 가문에서 임종이 가까운 사람은 그들이 평소에 출입하던 절이나 집안과 연계가 있는 절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린다. 〈사례 1〉과 〈사례 3〉에서 이들은 임종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찰에 거주하였다. 임종 전에는 〈사례 1〉과 〈사례 4〉에서처럼 보살계를 받을 수도 있고, 불경을 외우고, 보살 이름을 부른다.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러한 불교 의식은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오래된 관습이었다.[14]

임종 후 상례 절차는 모든 사례에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茶毘 즉, 화장을 하고, 남은 유골은 수습하여 절에 임시로 모셨다가 다시 산에 유골을 묻어서 분묘를 조성하고 있다.[15] 유사한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위 사례들의 묘지명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가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한 인물의 임종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1〉, 〈사례 2〉와 같이 중앙 관직을 지낸 인물이 사망한 후에는 왕이 임종 소식을 듣고 망자에 대한 예로 조회를 일시적으로 멈추었다. 그리고 시호를 추증하였다. 또한, 관리를 파견하여 상례를 돌보게 하였다. 〈사례 3〉의 경우 공주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실에서 제물을 내놓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인물인 〈사례 4〉의 경우 그러한 왕실의 사회적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사례 상례의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지위는 상례 기간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상례 절차별로 임종 후 화장할 때까지의 기간, 화장 후 안치하는 기간을 각 사례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삼국유사』 卷5, 感通 7, 「廣德 嚴莊」 條; 『삼국유사』 卷7, 塔像4, 「南白月二聖 努肹不得 怛怛朴朴」 條.

15) 최재석, 「조선초기의 상제」, 『규장각』 제7집, 서울대학교, 1983, 48쪽.

〈표 1〉 각 사례별 상례기간

	임종 후 화장까지	화장후 안치기간	총 상례기간
사례 1	10일	약 5개월	5개월 이상
사례 2	13일	약 3개월	3개월 이상
사례 3	17일	약 1개월	1.5개월 정도
사례 4	불분명	불분명	2개월 이상

최고 관직을 지냈고, 조정에서 임금과 정사를 논했던 〈사례 1〉과 〈사례 2〉 인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례 기간이 길다. 〈사례 3〉은 공주의 딸이지만 36세의 나이로 요절한 여성이라는 측면이 상례의 기간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례 4〉의 경우 아들 3명이 승려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는 낮지만 상례 기간은 2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판단된다.

상례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을 때 각 사례마다 상례의 공간이 절차별로 이동하고 있다. 임종장소, 화장장소, 유골안치장소, 분묘장소를 나누어서 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각 사례별 상례 장소의 변화

	임종장소	화장장소	유골안치장소	분묘장소
사례 1	개성 佛恩寺	西畿山	사찰 [이름 모름]	臨津縣 白嶽
사례 2	[장소 모름]	海安寺 기슭	淨土寺	臨津縣 承旨洞
사례 3	개성 彰信寺	聖住寺 기슭	개성부 雲開寺	雲開寺 동북쪽
사례 4	[장소 모름]	[장소 모름]	[장소 모름]	水陽山 기슭

사찰이라는 공간은 불교 상례에서 묘소를 조성하기 전까지 망자의 의례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었다. 〈사례 1〉과 〈사례 3〉은 임종이 예상되었을 때 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다비의 절차 역시 승려들이 주도해서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화장을 한 후에는 유골을 임시로 절에 안치하여 〈사례 1〉 이정의 묘지명에 서술된 것처럼 제사를 모

시고, 마지막으로 길일을 골라 점괘 등을 보고 묘소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교 상례 의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이 당시 상류 계층에게 절이라는 공간과 승려라는 의례 수행자는 전체 상례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2) 유교의례

여말선초 유교 상·제례의 사회적 실천은 상당한 시간 동안 조정에서의 논의과정, 법률 및 제도 설립, 의례 공간의 변화, 유교식 조상관념의 수용 등 여러 층위의 변화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었다. 먼저, 984년(성종 4) 유교식 상례와 관련된 五服制가 제정되었다.[16] 또한, 유교식 상례 절차와 제례가 관습으로 정착되기 전에 불교 상례를 지낸 후 삼년상이 혼용되는 과도기 모습을 고려시대 묘지명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 1182년에 쓰여진 묘지명에는 孫時揚이라는 인물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묘에 오두막을 짓고 삼년상을 지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삼년상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17]

즉, 주자가례에 입각한 유교 상·제례가 시행되기 전에 喪服, 삼년상, 여묘살이 등과 같은 유교 관념에 입각한 의례 행위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390년 공양왕 때는 사대부와 서인의 제사 대수를 규정하고 가묘 설치를 권장하기 시작하였다.[18] 하지만 상·제례의 유교적 전환은 조선시대 들어서 강력하게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정치적,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성리학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14세기 사례로 불교의례와 유교의례의 과도기 현상을 볼 수 있는 묘지명 사례, 유교 상·제례 모범으로 고려사 열전에 수록된 윤구생 가문의 사례, 마지막으로 15세기 조선 초기 김종직 가문 사례를 살펴보고자

16) 『高麗史』 卷64, 「志」 18, 禮六, 五服制度.
17) 「慶州皇南里孝子孫時揚旌閭碑」,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참고, 『韓國金石全文』 中世 下, 1984에 수록되어 있음.
18) 『高麗史』 卷63, 「志」 17, 禮五.

한다.

〈사례 5. 金賦妻許氏墓誌銘〉[19]

허씨(1255~1324)는 집현전대학사 및 同修國史 등 관직을 지낸 金賦과 14세에 혼인하였다. 자식은 아들 4명, 딸 3명인데, 두 명의 아들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셋째 아들은 淸悟大師로 당시 感恩寺의 주지였다. 넷째 아들은 승과 上上科에 합격하여 명성을 떨쳤다. 이후 허씨 부인은 1315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고 법명은 性曉였다. 1324년 임종 후에 충숙왕이 卞韓國大夫人 眞慧大師로 추봉하였다.

- 1301년 4월 2일 남편 김변 임종.
- 1301년 5월 22일 나라의 의식을 거절하고 스스로 장례도구를 마련하여 大德山의 남쪽 언덕에 묘소 마련.
- 장례 후 묘소와 가까운 곳에 집과 고인의 명복을 비는 感應寺라는 절을 지음.
- 47세에 과부가 되었는데 초하루와 보름의 제사 때 반드시 묘소에 갔고, 삼년상을 치름.
- 명절 제사 때에는 바깥출입을 삼가하고 직접 묘소에 감. 승려로 출가 후 그만 둠.

〈사례 6. 고려사 尹龜生 가문 사례〉[20]

윤구생(1317~1381)은 茂松尹氏 집안으로 찬성사 尹澤(1289~1370)의 아

19) 1324년 金開物이 작성함. 묘지명은 安鼎福이 편찬한『雜同散異』제4책, 아세아문화사에 수록되어 있음. 남편 김변의 묘지명도 남아 있는데 실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되어 있고, 원문은『韓國金石全文中世下篇』, 亞細亞文化社, 1984을 참고할 것. 김변 임종 및 매장 날짜는 그의 묘지명을 참고함.

20) 윤구생 가문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할 것.『高麗史』卷106,「列傳」, 尹諧, 尹澤;『高麗史』卷121,「列傳」, 尹龜生;『高麗史』卷121,「列傳」, 尹紹宗, 尹會宗; 윤택 묘지명「栗亭先生 尹文貞公墓誌銘 幷序」, 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 참고; 윤선좌 묘지명「高麗國 匡靖大夫 僉議評理 藝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 上護軍致仕 尹公墓誌銘」, 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 참고; 윤구생처 묘지명「尹母崔夫人墓誌幷序」, 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 참고.

들이다. 이 가문은 증조부 尹諧(1231~1307)가 과거급제 후 중앙관직에 진출한 이후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관직자를 배출하였다. 윤구생은 判典農侍事 관직을 역임한 후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였다. 윤택은 유언으로 장사지낼 때 불교법식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21] 윤구생은 선친의 유언에 따라 가문에 유교 제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 벼슬을 그만둔 후 錦州에 거주하면서 사당 조성.
- 매 초하루 보름과 四仲 및 俗節에는 3代 조상을 제사지냄.
- 冬至에는 始祖, 立春에는 先祖 제사를 지냄.
- 제례 절차는 朱子家禮에 의거함.
- 부모와 조부모의 무덤에는 묘석을 세우고 그 忌日을 새겨 둠.
- 묘 남쪽에는 齋室을 건축하고 석비에 고조, 중조 이하의 忌日을 새겨 둠.

〈사례 7. 金宗直 가문〉[22]

金宗直(1431~1492)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과거 급제를 통해서 출사하였고 여러 관직을 거쳐서 정2품 관직을 지낸 인물이다. 아버지 김숙자(1389~1456)는 12세부터 吉再로부터 유학을 익혔고, 과거급제 후 개령현감 등을 거쳐 정4품 司藝까지 역임한 인물로 유교 상·제례와 관련된 집안의 가풍을 확립하였다.

- 김숙자는 모친이 돌아가신 후, 殮, 襲, 虞, 祔, 練, 祥 등의 의식을 朱子의 禮에 의거하여 거행함. 묘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고 상례를 치름.
- 가묘를 설립하여 曾祖考妣까지 3대 신주를 모시고 유교 제례로 四仲祭, 忌日祭, 節日祭, 朔望祭, 薦新祭 등을 사당을 중심으로 모심.
- 元正, 단오, 중추 묘제를 지내기 4~5일 전부터 성묘를 하고 당일 묘제 진행.

21) 『高麗史』 卷106, 「列傳」, 尹澤, "我死葬毋用浮屠法."
22) 김종직 가문 상·제례 관련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할 것. 『佔畢齋集』, 「彝尊錄 上下」

- 김숙자는 대종가에서 증조 良醞府君을 체천 후 최장방인 본인 집안으로 신주를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스럽게 여기고, 지방을 만들어 감실에 봉안 제사를 모심.
- 모든 사당 제례를 지내기 3일 전에 목욕, 이틀 동안 행동과 음식 등을 삼가는 등 散齋하고, 하루는 致齋함.
- 복장도 吉祭에는 朝服을, 忌祭에는 白紵涼衫, 黲巾, 素鞾를 입도록 함.

위 사례는 14세기 초반부터 15세기 후반의 유교식 상·제례 사례를 간단히 요약한 것인데, 〈사례 5〉와 〈사례 6〉은 고려 말기 상황에서 나타난 의례의 양상을 언급하고 있고, 〈사례 7〉은 조선 초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례 계층은 모두 중앙에서 관직을 역임한 계층으로 〈사례 5〉의 허씨 부인은 출가를 선택할 만큼 불교에 깊이 의지하고 있지만 유교의례를 혼용해서 지내고 있고, 〈사례 6〉 윤구생 가문과 〈사례 7〉 김종직 가문의 경우 불교 상례 법식을 거부하고 유교 상·제례로 전환한 가문의 사례이다.

14세기 초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 5〉를 검토해 보면, 허씨 부인의 아들 2명이 출가하여 유명한 승려로 활동하고 있었고, 남편 임종 후에 묘소와 가까운 곳에 사찰을 지어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임종 후 장례까지의 절차는 불교 법식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묘소를 만든 후 삼년상을 치른 점,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朔望祭를 지내고 있다는 점, 명절 제사를 묘소에서 모신다는 점을 보았을 때 유교 상·제례 방식과 혼용되어 있었다. 허씨 부인은 이후 불가에 출가를 하였고, 그 후에는 묘소 제사를 그만 두었다. 이 사례 집안이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인 허씨 부인의 남편 김변이라는 인물이 同知貢擧, 集賢殿 大學士 등을 역임하면서 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례 6〉 윤구생 가문의 경우, 1370년에 사망한 아버지 윤택이 불교에 비판적인 유학자로 유학적 가풍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윤택의 친척 중에는

승려로 활동하는 사람도 묘지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유언으로까지 불교 법식을 거부하라고 남기고 임종하였다. 1370년 윤택이 사망한 후, 윤구생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유교식 상례를 지냈고, 관직을 그만 두었을 때 집안에 사당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유교 제례를 모시기 시작하였다.

〈사례 6〉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교 제례인 사중제, 속절제, 기제, 동지에 지내는 시조에 대한 제사, 입춘에 지내는 선조에 대한 제사 등은『주자가례』텍스트에서 기본이 되는 제례들 이다. 또한, 선산에도 묘석, 묘비를 건립하고, 선영 아래에는 齋室도 건립하고 고조 이하 기일을 비석에 새겨 두는 등 유교의례에 필요한 공간 및 사물에도 정성을 들였다. 제례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문헌을 통해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국가 차원에서 공양왕대에 가묘 설치를 권장하기 전에 이미 윤구생 가문에서는 유교 제례를 모시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공양왕은 그의 집안을 모범으로 삼아서 旌表하고 부역까지 면제하는 특혜를 베풀었다.[23]

윤구생 가문은 유교 가례의 실천과 유교 가풍을 기반으로 그 후대에도 관직을 꾸준히 이어가게 되었다. 남아있는 기록을 근거로 그의 후손들의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윤구생의 둘째 아들 윤소종은 고려 말 과거 급제를 통해 출사하였고, 조선 태조를 도와 原從功臣이 되었으며 관직도 修文館大提學까지 올랐다. 또한, 셋째 아들 윤회종 역시 과거 급제 후에 고려 말 조선 초기까지 관직을 거쳤다.

〈사례 7〉 김종직 가문에서 길재로부터 교육을 받은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가 집안의 유교의례 가풍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종직이 부모가 임종하였을 때, 삼년상을 치루면서 집안의 상·제례를 기록하고 있는「彝尊錄」에는 당시 가문에서 행하였던 유교 상·제례 종류, 절차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김숙자는 주자가례에 의거해서 모친상을 치르고, 3년 간 여묘살이까지 엄격하게 행하고 있었다. 상례가 끝난 다음에는 당시 국가에서 권장한 3대 증조고비까지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진행하였다.

23)『高麗史』卷121,「列傳」, 尹龜生.

〈사례 7〉에서는 유교 상·제례를 실천하면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각 제례에 따른 격식의 문제, 체천 이후 최장방이 신주를 모시는 문제, 大宗家와 지가의 구분, 제례 복식 문제, 제례 모시기 전의 몸가짐 등 이전보다 심화된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유교 의례가 3세대 가량 지속되면서 실천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례 6〉, 〈사례 7〉을 보았을 때, 죽음을 맞이하고 처리하는 공간은 사찰에서 집으로 전환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기 불교의례에서 명복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모셨던 사찰은 조선 초기 집안 가묘로 공간이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불교 상례에서 의례 지식을 전유하였던 승려들의 역할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 대신 조선시대 유교의례의 전환을 통해서 가족 및 친족 내부에서 학식을 갖춘 연장자가 주자가례 텍스트와 윗대 연장자를 통해서 의례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해 나가게 되었다.

3. 상·제례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1) 의례 대상과 수행주체 변화

고려시대 불교의례는 주지하다시피 팔관회, 연등회, 우란분재, 상례 등 다양하지만, 개별 가문 성원의 일생의례와 연관된 것은 불교식 상례나 우란분재와 같은 의례이다. 의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불교 상례를 고려해 보았을 때, 亡者는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극락왕생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망자 스스로가 완전한 의례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례 대상으로 다양한 부처와 불교 경전 등 불교의 상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망자는 그러한 불교 상징을 통해서 극락왕생의 세계로 인도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유교의례가 도입이 되면서 의례 대상은 변화하였다. 유교 상례 의례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亡者가 된다. 또한, 유교 상례의 경우 신주를 제작한 이후 가묘에 봉안을 해서 지내는 제례에서는 바로 신주가 조상의 상징으로 의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의례 대상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의례 행위의 차원에서 대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과정이 내포되어있다. 여말선초 성리학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회 세력의 등장 이후, 그들이 불교 세계관을 비판하는 과정 속에 죽음에 대한 관념과 조상관념을 유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러한 사회 세력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의례 지침의 보급, 의례 공간 설립 등을 주장하고 승인받으며 이루어진 사회적 실천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다.

의례 대상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함께 불교의례가 유교의례로 전환되면서 의례 수행주체의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불교의례를 수행하는 주체인 승려의 역할은 유교의례에서는 망자나 조상의 후손들로 대체되었다. 이미 검토한 고려 말 불교 상례에서 임종 후 이루어지는 다비 절차나 유골을 안치한 후 이루어지는 제례 의식은 절에서 승려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지어는 묘소를 조성한 후에도 〈사례 5〉 허씨 부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절을 조성하고 그 절에서 승려를 통해서 망자의 명복을 기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교 상·제례에서 모든 의례의 주체는 그 망자의 직계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같은 氣를 전해 받은 후손들만이 조상을 적합하게 歆饗할 수 있는 주체라는 유교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24]

의례 수행 주체가 가족 및 친족 집단 내부로 바뀌면서 외부 사회적 공간인 절과 외부 의례 수행 주체인 승려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유교 이념에 부합하는 명분을 지닌 상례와 제례는 개별 가문 내부에서 주자가례 텍스트 지침에 따라 의례 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외부 의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었다. 한편으로 가문 중심 의례는 사찰이나 승려와 같은 외부의 도움 없이 가내 친족 내부에서 수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가문의 결속을 통해서 사회적인 실천이 확산될 수 있었다.

24) 同氣론과 관련해서 다음 글 참고할 것. 이종서, 『14~16세기 韓國의 親族用語와 日常親族關係』,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18~226쪽.

결과적으로 의례 대상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의례 수행 주체의 변화는 고려시대 불교의례를 통해서 형성된 가문과 사찰 및 승려와의 사회적 관계를 크게 약화 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약화는 조선 시대에 들어서 불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과 결합되면서 이전 시대에 비해서 사찰의 영세화를 가져왔다. 또한, 검토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귀족 가문의 자제가 불교에 출가하는 것이 여말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유교가 새로운 시대의 가치로 제시되면서 조선 시대 상류층 가문에서 출가는 더 이상 선호되지 않았다.

2) 의례 공간 설립과 제도화

고려 왕조가 개창된 초기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불교의 중요성을 선언한 이후[25] 불교는 고려 사회의 관료제도 및 경제제도 등과 결합되었다. 10세기 중반 광종 때 과거제도 속에 僧科를 마련하여 관료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승려를 선발하게 되었고, 제도적으로 사찰이 寺院田을 운영할 수 있게 보장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도 갖추게 되었다. 불교의례 공간인 사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층위의 제도와 결합되어 국가 차원의 공적인 의례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적인 의례까지 주도적으로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사적인 의례 범주로 볼 수 있는 불교 상례는 이미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찰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 사람의 상례를 치르는 동안 사찰은 임종 후 화장 전까지 시신을 수습하는 공간이자,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다. 또한, 매장 후 묘를 관리하고 망자의 명복을 빌며 제사를 올리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미 검토한 불교 상례 사례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한 사람의 상례를 치르는 동안 여러 사찰을 거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례 3〉과 같이 임종의 공간이 되는 사찰, 화

25) 태조는 훈요10조를 통해서 첫째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섯째 항에서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고 선언한다. 그만큼 불교와 그 의례를 강조하고 있었다. 『高麗史』 卷2, 「世家」2, 태조 26년.

장 장소를 제공하는 사찰,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사찰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 〈사례 1〉이나 〈사례 2〉처럼 두 군데 정도 다른 사찰을 거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은 각 가문이 맺고 있는 여러 사찰과의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 제례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사찰과 함께 묘소도 명절 제사 등의 의례 공간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교의례가 조선 시기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상·제례 의례의 주요 공간은 가내 공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물론, 묘소는 여전히 제례의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사례 6〉이나 〈사례 7〉에서 보면, 사망한 부모가 불교 상례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례는 집안에서 이루어졌고, 김종직 집안에서 볼 수 있듯이 분묘 공간에서 삼년상과 함께 의례가 나타났다. 또한, 가문 내 조상의 신주를 모실 수 있는 가묘를 조성해서 정기적으로 제례를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사례 6〉 고려 말 윤구생 집안과 〈사례 7〉 김종직 집안의 가묘 설치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회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 즉, 전자가 여말 선구적인 개인의 사례인 반면 후자는 조선 왕조의 가묘 설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반영된 맥락 속에 존재한다. 그러한 두 사례의 시간적인 간격 사이에는 새로운 유교적 의례 공간 창출을 위한 조선 초기 조정의 노력이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 【1392년 태조 1년】 公卿으로부터 下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家廟를 세워 선대를 제사하게 하고, 庶人은 그 정침에서 제사지내게 하고, 그 나머지 음사는 일절 금하게 할 것.[26]
>
> 【1397년 태조 6년】 사대부 가묘 설치 명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숭상하고, 무속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여 사당을 설치하게 하고 음사를 행하는 자는 憲司 감독해서 처리할 것.[27]
>
> 【1401년 태종 1년】 가묘 설치 명이 내려진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음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가묘는 설치방법을 몰라서 행해지지 않고 있음. 사대부 집, 관사를 중심으로 서울은 1402년 1월, 지방은 2월부터

26) 『太祖實錄』 卷2, 太祖 1年 9月 壬寅(24日).
27) 『太祖實錄』 卷11, 太祖 6年 4月 丁未(25日).

가묘를 설치케 하고 따르지 않으면 헌사를 통해 파직 건의.[28]

【1406년 태종 6년】『경제육전』에 "공경대부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가묘를 세워 때에 맞게 제사를 지내고, 어기는 자는 불효로 논죄한다."라고 했으나 100명 중 한두 명도 안되니, 1406년 안에 독촉케 하고 가묘를 안세우면 논죄함. 서울은 사헌부, 지방은 감사가 감독.[29]

【1413년 태종 13년】 承重子가 1413년 당해 안에 사당을 세우게 하고 어기면 헌사가 감독해서 처벌할 것.[30]

【1427년 세종 9년】 가묘 및 신주 설치 여부 점검. 2품 이상은 무신년(1428)까지, 6품 이상은 경술년(1430), 9품 이상은 계축년(1433)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가묘를 설치한 집은 승중자에게 상속할 것. 서울은 사헌부, 외방은 감사가 점검.[31] 아내가 여럿인 경우 祔하는 문제, 始祖를 정하는 문제, 4대 제사 문제.[32]

【1430년 세종 12년】 5, 6품 가묘 설치를 명한 최종 해. 계모나 계조모가 살고 있는 집에 가묘세우는 것 들어주지 말 것. 가묘 설치여부만 고찰.[33]

【1431년 세종 13년】 이미 정해진 법대로 사헌부에서 명년(1432)에 규찰케 함.[34] 사대부 가묘 설치를 계축년(1433)까지 시간을 준 것을 무오년[1438년]까지 연장할 것을 대사헌이 요청했지만 임금이 기한을 늦추는 것에 반대함.[35]

【1472년 성종 3년】 왕이 예조와 사헌부에 가묘 설치 및 신주 모시는 것을 감찰할 것을 명함.[36]

【1473년 성종 4년】 사헌부에서 조사한 가묘를 세우지 않은 40명 관원을 처벌함.[37]

28)『太宗實錄』卷2, 太宗 1年 12月 己未(5日).
29)『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6月 丁卯(9日).
30)『太宗實錄』卷25, 太宗 13年 5月 戊子(10日).
31)『世宗實錄』卷35, 世宗 9年 2月 戊辰(10日).
32)『世宗實錄』卷35, 世宗 9年 6月 庚辰(23日).
33)『世宗實錄』卷49, 世宗 12年 9月 甲寅(16日).
34)『世宗實錄』卷54, 世宗 13年 12月 辛丑(10日).
35)『世宗實錄』卷54, 世宗 13年 12月 癸丑(22日).
36)『成宗實錄』卷19, 成宗 3年 6月 戊寅(13日).
37)『成宗實錄』卷26, 成宗 4年 1月 甲辰(13日).

시기별로 나타나고 있는 가묘 설치 논의의 흐름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와 태종 시기 가묘 관련된 논의를 보면 가묘 공간의 창출이 기존 불교의례 및 음사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초기 논의는 가묘 설치의 계층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대부 관료 계층이 중심이 되지만 이념적으로는 가묘 설치가 어려운 서인들이 채용할 수 있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그래도 태조 때 가묘 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태종 때에는 가묘 설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단 한양과 지방을 구분해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 가옥보다 官舍에 가묘를 설치하여 수령들이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성은 집의 공간을 고려해서 궤 및 벽감 등의 형태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세종 때에는 가묘 설치 실태를 감독하기 위해서 품계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확인케 하였다. 그러한 감독은 성종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가묘를 세우지 않은 관원 40명을 처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초기 가묘 설치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그 시행 방안이 상당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벌칙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가묘 설치 압력은 관료나 사대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교의례 공간의 설립은 그 자체로 기존 불교의례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된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묘라는 새로운 의례 공간의 조성은 그 공간을 매개로 의례뿐만 아니라 유교적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의례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불교가 한국사회에 도입된 후 고려 말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성리학 지식을 수용하였던 계층의 적극적인 불교 비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회의 다양한 층위와 공고히 결합되어 있었다. 왕실은 고려 초기부터 불교활동을 후원하였다. 그리고 여러 왕의 아들들은 출가를 통해 사회적인 존경을 향유

할 수 있었으며, 왕위 계승에서 나타나는 투쟁 양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38] 또한, 왕은 승과제도의 실시, 사원전 허용 등 제도화를 통해서 중앙의 통제 속에 불교를 두려고 하였다.[39] 국가의 정치를 지배하는 왕실과 사람들의 세계관 및 정신을 지배하는 왕실 출신 승려들은 사회적으로 불교의 폐단이 심각하게 인식되기 전까지는 이상적인 구조로 보였다.

고려 중기 점차 불교 세력이 통치권과 결합된 귀족불교의 특징으로 변화하고 있었다.[40] 고려 중반 이후 묘지명을 보았을 때 귀족 집안 자제 중에서 출가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은 그들이 승려나 사찰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11세기 이후 불교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불교와 관련된 禁令이 지속적으로 반포되고 있었다. 11세기 초 현종 때는 집을 희사하여 절을 만들거나 부녀자가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였고,[41] 또한, 승려가 백성들을 꾀어 재물을 거두어 모으는 것도 금지하였다.[42] 12세기 초 숙종 때에도 집을 희사받아서 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다.[43] 이러한 금지령들은 고려 초기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왕실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만큼 불교가 국가의 경제, 사회 윤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

38) 이정훈에 의하면 고려 태조(877~943)부터 명종(1131~1202)때까지 왕실 자제로 출가한 승려가 19명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 출가를 하였고, 출가의 목적도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 불교 교단을 장악하기 위한 측면 등을 그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정훈,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가와 활동」, 『역사와현실』 7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93~125쪽.

39) 고려전기 승과를 통해 승계를 받고, 서경을 통해 국사 및 왕사의 임명이 이루어지는 등 관료체제 속에 제도화 과정과 함께 고려 후기 그 제도가 약화되는 과정은 허흥식 논문 참고할 것. 허흥식, 「고려시대의 승과제도와 그 기능」, 『역사교육』 19집, 역사교육연구회, 1976, 103~138쪽; 고려 전기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원전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이병희 논문을 참고할 것. 이병희, 「고려전기 사원전의 분급과 경영」, 『한국사론』 18, 한국사학회, 1988, 29~74쪽.

40) 허흥식, 「고려의 불교와 융합된 사회구조」, 『동양문화연구』 10,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83, 56쪽.

41) 『高麗史』 卷85, 「刑法 二」 禁令, "復禁人捨家爲寺, 婦女爲尼."

42) 위의 책, "十九年二月, 敎曰, "僧尼誑誘愚民, 鳩聚財物, 輸以驛馬, 害莫大焉, 令官司, 嚴加禁斷."

43) 위의 책, "禁男女僧尼群聚萬佛會, 及舍家爲寺."

문이다.[44]

그렇다면 당시 불교 의례는 어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의례는 그 의례 참여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서열에 따른 권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연등회나 팔관회와 같은 국가 의례는 왕실의 권위를 불교 의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불교 세계관 속에서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불교 의례가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왕실, 승려, 상류 계층, 일반 백성들이 계급은 다르지만 의례를 통해 불교라는 세계관 속에서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불교 상·제례와 관련해서 의례를 매개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자. 가문과 승려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 가문은 그들 집안의 의례를 담당할 수 있는 승려 또는 사찰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한 가문의 자제가 승려로 출가하는 경우가 고려 중기 이후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문과 승려의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검토한 〈사례 1〉 이정과 〈사례 4〉 양택춘 집안의 경우 그들의 자제가 출가를 한 상황이었다. 〈사례 5〉 허씨의 경우도 아들 2명이 모두 승려였을 뿐만 아니라 과부가 된 후 본인도 출가해서 생활하고 있고, 심지어 윤구생 가문이나[45] 김종직 가문의 고려시대 인물 중에도[46] 출가한 경우가 있었다. 고려 후기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승려의 사회적 위치는 불교계에 소속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한 집안 내부의 성원으로 의례 수행

44) 강진철에 의하면, 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점차 늘어나 전체 국토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142쪽.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 피지배 계층의 출가 확대 현상은 세금과 역을 질 수 있는 백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사회 윤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불교를 바라보게 되었다.

45) 윤구생의 조카뻘이 되는 宣暢이 불교에 귀의했으며(『牧隱文藁』 권17 및 『東文選』 권127에 있는 윤택 묘지명[尹文貞公墓誌銘] 참고), 윤택[윤구생의 父]의 고모부인 윤선좌 막내 아들도 출가하였다(『稼亭集』 권12 및 『東文選』 권125에 있는 윤선좌 묘지명[尹公墓誌銘] 참고).

46) 김종직이 쓴 집안 의례 기록인 「彝尊錄」에는 고려 말 승려가 된 조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승려 弘毅, 승려 六和, 승려 善雄 등이 있었다.

역할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문 내부의 친족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불교 사상이나 의례의 영향력은 분명 조선시대 유교 의례가 조직화하는 친족관계와 뚜렷이 구분된다. 특히, 死後 의례인 상·제례는 후손들의 공동 활동이 요구되는 의례이기 때문에 의례를 통해서 친족관계가 강화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불교 의례의 경우 사찰을 통해서 승려가 상·제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문에서 주도해서 건립한 願堂이 있는 경우 사망 후 한 사람의 제례는 사찰을 통해서 영속될 수도 있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의 의례상의 역할은 유교 의례와 비교했을 때 그 강제성이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더군다나 불교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극락왕생설 및 윤회설을 바탕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의 노력보다는 佛事를 통한 승려의 노력이 死者를 적합하게 인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고려 후기 귀족들이 노후에 불교에 의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가계 재산의 상속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47] 〈사례 5〉 허씨의 경우 남편이 사망한 후 사찰과 집을 새로 짓고 있는 양상은 가계 재산의 상당한 양이 소모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1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왕이 집을 희사하여 절을 만드는 행위나 원당 조성을 금지하는 하교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민간의 가계 재산이 사찰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까지 고려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연구에서 남녀평등 상속이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왔지만, 불교와 가문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사찰에 기부되는 재산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향후에 요구된다.

귀족 계층의 원당 설립은 가문 차원에서 집안 사찰을 소유함으로써 집안 의례를 수행함과 동시에 형식적으로 사찰에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한 면세 혜택과 노동력 동원에도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고려중기

47) 허흥식은 귀족이 노후에 불교에 의탁하거나 죽음에 이르기 전에 사원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묘지명 기록을 토대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교식 장례와 제례를 통해서 일반인이 불교와 밀착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허흥식, 「고려의 불교와 융합된 사회구조」, 『동양문화연구』 10,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83, 65쪽.

이후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승려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 한 가문과 왕실과의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귀족들이 왕실을 위하여 세운 원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 공간을 통해서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48] 뿐만 아니라 한 가문에서 출가한 자제가 승려로 출세한 경우, 〈사례 4〉 양택춘 가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집안 자손에게 출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 불교 상·제례 의례를 매개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양상은 다양한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문과 승려 및 사찰과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의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서 친족 관계를 포괄하는 경우가 고려 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가문은 사후 세계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찰을 통해서 출사 및 왕실과의 관계를 맺는 등 정치적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 또한, 친족의 재산을 사찰에 기부함으로서 일반 재산 상속분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한편으로 일부 원당과 같은 친족이 운영하는 사찰인 경우 재산을 효과적으로 영속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었다.[49] 그러한 측면에서 불교 의례를 매개로 나타나는 가문과 사찰간의 결속관계는 공고하였고,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거시적으로 고려사회에서 조선사회로의 이행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제례 의례변화는 주지하다시피 불교의례가 유교의례로 사회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례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학적인 관

48) 원찰 및 원당 관련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진성규, 「고려후기 원찰에 대하여」, 『역사교육』 36, 역사교육연구회, 1984, 91~131쪽; 한기문, 「고려시대 관인의 원당(상)·(하)」, 『대구사학』 39·40, 대구사학회, 1990.

49) 특정한 가문의 재산 기탁을 통해서 운영되는 원당의 경우, 한 가문의 재산상속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문중재산은 특정 친족집단에 친족의례를 위한 공동재산으로 귀속이 되지만, 원당으로 들어간 특정 가문의 재산은 그 소유방식, 전승방식 뿐만 아니라 용도 등도 달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이러한 가문이 기탁한 원당의 재산에 대한 연구는 독립된 주제로 앞으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유교의례보다 소위 종교적 체제(religious system)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50]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상으로 부처와 같은 상징이 존재하고, 의례실천을 위한 경전인 불경이 있고, 종교 의례 전문가인 승려와 함께 독립된 종교 활동 공간인 사찰이 있다. 이러한 종교적 체제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려시대 불교의 공인과 함께 승과제도, 사원전 허용 등과 같은 제도적인 수준과 결합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종교적인 체제는 의례를 매개로 당시 주요 사회 계층과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반면, 유교의례의 경우 조상이 의례 대상이 되고, 의례 전문가는 그 조상의 후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의례 공간도 개별 가문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을 보았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제례 의례변화의 특징은 승려가 주도하는 사찰중심의 의례활동이 친족집단이 주도하는 가문중심의 의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례 공간과 수행 주체의 변화는 의례를 매개로 결합된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가묘라는 의례 공간과 친족 집단이라는 수행 주체의 형식적 변화가 점차 정착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다. 먼저, 그러한 형식적인 변화를 사회적으로 조성하는데 조선 초기 제도와 정책적인 수준에서 가묘 설립과 주자가례 보급[51]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가묘 공간의 설립은 불교 의례 공간인 사찰을 탈피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주자가례 보급을 통해서 친족 내부 구성원이 유교 의례를 익히고 의례 전문가로 실천하는데 기본 지식을 제공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죽음과 조상에 대한 유교적 인식을 기반으로 유교 상·제례는 성리학을

50) 인류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종교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Haviland, *Cultural Anthropology*, Orlando: Harcourt College Publishers, 2002, pp.364~387.

51) 조선 초기 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자가례』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403년 태종은 吏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처음 벼슬을 시작하는 사람과 7품 이하인 관직자에게 주자가례를 시험치게 하였다. 『太宗實錄』 卷5권, 太宗 3年 6月 乙卯(9日). 또한, 같은 해 평양에서 가례 150부를 인쇄하게 한 후에 各司에 반포하였다. 『太宗實錄』 卷6권, 太宗 3年 8月 甲戌(29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회세력의 노력으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의례 변화는 죽음과 조상에 대한 유교적 인식을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유교 관념에 의하면 조상은 죽어서도 효 관념을 바탕으로 후손들이 섬겨야 될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었다.[52] 죽음에 대한 관념도 임종 후 氣는 흩어지고 理만 남아 '至正한 신'이 되기 때문에 禮에 입각한 제향을 흠향해야 된다는 의식이 유교 제례의 원칙이 되고 있었다.[53]

유교 의례가 점차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불교 의례를 매개로 한 가문과 사찰 간의 사회적 관계는 상당히 약화되고 있었고, 사대부 가문에서 자제를 출가시키는 경우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측면은 승려의 사회적 지위 변화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사찰과 승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 경제적 교환 관계의 소멸을 의미한다. 특히, 여말 선초 의례 전환이 사회 관습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 전환기 사회 불교 구습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고려시대 舊세력과 밀착된 불교 사찰 및 승려들과의 사회적 관계는 의례 변화를 통해서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유교 의례를 매개로 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유교적인 의례 공간과 의례 수행 주체의 전환은 주자가례의 텍스트가 규정하는 방식을 참고로 이루어졌다. 가묘는 宗子의 집안에 설립이 되었고, 가묘가 있는 종가를 중심으로 유교 의례가 진행되었다.[54] 또한, 의례 수행자는 종자를 중심으로 연장자가 주도하는 형태가 되었다. 의례가 외부 전문 의례 공간인 사찰에서 친족 내부 공간인 가내로 옮겨가면서 친족 내부 성원들의 위계질서가 뚜렷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 불교 상·제례의 경우 사찰에서 승려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의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형제자매 간

52) 조준은 가묘설립과 관련해서 가묘의 도리는 죽은 사람을 섬기기를 살아있는 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러한 표현에 효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상에게까지 확대되어 있다. 『高麗史』, 卷112, 열전31 조준.

53) 권기석, 「조선전기 유교적 조상제사 관념과 친족관계의 전개」, 『애산학보』 29, 애산학회, 2003, 80쪽;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5일, "天地之間 理與氣而已. 人之生也 以有氣, 故或有非事 及其死 則氣散而只有理本. 至正之神 以非禮事之 則神必不享矣."

54) 『朱子家禮』, 「通禮」, 〈祠堂〉, "凡祠堂所在之宅, 宗子世守之, 不得分析."

위계질서는 강조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교 의례의 경우 친족 구성원들의 의례 역할 분담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상과의 계보 관계에 따라서 종자와 지자 간의 구분 등 친족 계보상의 위계질서가 친족내부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가 되고 있었다.

유교 의례를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무엇보다 제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제례 참여 친족 집단의 범위가 시간의 변화와 함께 점차 확대되면서 조선중기 이후 구체적인 친족 조직인 문중 또는 중중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례 6〉과 〈사례 7〉을 검토해 보았을 때, 사당에서 3대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고 있는데 그런 경우 사당 제례에서 제례 참여범위가 가장 확대된 경우는 위로 3대에 해당하는 증조모의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많은 후손들이 참가하게 된다. 또한, 〈사례 6〉에 보이는 선조와 시조에 대한 제사는 사당에서 모시는 신주 대수를 벗어나는 윗대 조상에 대한 제사인데, 이런 경우 참여자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되고 그러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초창기 유교 제례가 정착되는 시기 동안에는 奉祀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친족 조직화 단계는 조상의 대수가 점차 멀어지면서 사당에서 親盡한 조상을 대상으로 한 제례가 논의되는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교 제례는 그 의례가 새로운 사회조직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위대한 조상은 집안 내부의 제례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 이후 각 지방에 서원 및 사우 설립의 정당성을 제공하면서 조상에 대한 의례를 매개로 그 지역 사회 다른 가문과의 결속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의례를 매개로 나타나는 의례 공간의 변화, 의례 수행 주체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회 재편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에서 필자는 여말선초 상·제례 의례가 매개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고, 의례 변화가 어떻게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검토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려 말 불교 상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고려 귀족 가문과 사찰 및 승려와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의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관계를 넘어서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귀족 가문과 승려는 친족관계로 이어져 있어서 가문의 정치 경제적 교환이 승려와 사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전환기에 이루어진 불교에 대한 비판을 통한 유교 의례의 수용은 의례 수행주체 및 의례 공간을 변화시켰다. 승려가 사찰에서 주도하였던 의례는 유교 의례가 정착된 가문에서는 친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가내에서 상례가 이루어지고 새롭게 설치된 사당을 중심으로 제례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의례 형식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고려 후기 불교와 가문과의 사회적 관계의 결속을 점차 약화시켰다. 반면에 친족 내부로 들어온 유교 상·제례는 친족 관계의 양상을 그 이전 사회와는 다르게 확연히 바꾸어 나가는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례변동이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재편성하는데 있어서 의례 수행주체 및 의례 공간의 변화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었다. 특히, 유교의례의 실천은 친족 구성원들이 의례의 모든 과정과 의례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친족 간 결속력을 확대해갔으며 향후 친족집단이 현실 속에서 향촌사회 단위 그리고 생활 공동체 단위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 집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는 지배계층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피지배 계층의 의례변동의 양상을 보여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불교의례의 경우 조선시대 국가의 탄압뿐만 아니라 관료의 유교의례 실천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된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측면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항은 본고의 중심 논의와 벗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독립된 주제로

고려해야 될 점들이다. 본고에서 무엇보다 주목하고자 한 점은 불교의례에서 유교의례로의 변동이 구체적으로 첫째, 승려집단에서 친족집단으로 의례 수행주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사찰에서 가내공간이라는 의례 공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의례 주체와 의례 공간 변화를 매개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1. 자료

『稼亭集』
『高麗史』
『東文選』
『三國遺事』
『朝鮮王朝實錄』
『佔畢齋集』,「彝尊錄 上下」
『雜同散異』
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2. 논저

강진철,『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고영진,「15·16세기 주자가례의 시행과 그 의의」,『한국사론』21, 한국사학회, 1989.
_____,『朝鮮 中期 禮說과 禮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권기석,「조선전기 유교적 조상제사 관념과 친족관계의 전개」,『애산학보』29, 애산학회, 2003.
서윤길,「불교사상이 고려의 국난타개에 미친 영향; 고려의 호국법회와 도량」,『불교학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7.
이병희,「고려전기 사원전의 분급과 경영」,『한국사론』18, 한국사학회, 1988.
이정훈,「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가와 활동」,『역사와현실』7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이종서,『14~16세기 韓國의 親族用語와 日常 親族關係』,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정긍식,「조선전기 朱子家禮의 수용과 祭祀承繼 관념」,『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진성규, 「고려후기 원찰에 대하여」, 『역사교육』 36, 역사교육연구회, 1984.
최재석, 「조선초기의 상제」, 『규장각』 제7집, 서울대학교, 1983.
한기문, 「고려시대 관인의 원당(상)·(하)」, 『대구사학』 39·40, 대구사학회, 1990.
허흥식, 「고려시대의 승과제도와 그 기능」, 『역사교육』 19집, 역사교육연구회, 1976.
_____, 「고려의 불교와 융합된 사회구조」, 『동양문화연구』 10,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83.
황원구, 「이조 예학의 형성과정」, 『동방학지』 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3.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환』, 서울: 아카넷, 2003.
Haviland, *Cultural Anthropology,* Orlando: Harcourt College Publishers, 2002.

<Abstract>

Ritual Change and Transformation of Social Relation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Lee, Sang-Gyun

In this article, I considere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rel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death ritual and the ancestral ritual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Namely, I examined how the social relation entangled with the Buddhistic ritual change into the social relation based on Confucian ritual. For my research purpose, I investigated the change of ritual object, ritual performer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itual space.

In late Goryeo period, the social relation revealed in Buddhistic death ritual between the family and Buddhistic monks was more complicated beyond simple give and take relationship of the ritual service. But during the Joseon period, by the adapting the Confucian way of ritual in the society, Buddhistic rituals decreased and the social relation between the family and Buddhistic organization including monks became weakened. Instea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fucian ritual created the domestic shrine as new ritual space and it made the possibility of making kinship organization by giving ritual roles to only kinship members.

* Key Words: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Ritual Change, Social Relation, Buddhistic Ritual, Confucian Ritual

• **논문투고일**: 2012년 6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14일 • **게재결정일**: 2012년 8월 28일